

3. 측정 결과에 따른 종합 의견

3-2. 문제점 및 개선대책

-분진발생원에서 분진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국소배기시설을 설치하고 다량의 분진발생 장소는 격리하도록 합니다.

-발생된 분진이 작업장 전체에 비산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분진발생 부위를 밀폐시키거나 작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집진 장치를 설치하시기 바랍니다.

-공학적 대책을 강구하여도 근로자가 분진에 폭로될 우려가 있는 작업 장소에는 근로자 자신의 보호 대책으로서 호흡용 보호구의 착용이나 작업시간의 단축 또는 휴식시간의 조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2)소음

-신설기계는 소음이 적은 기계를 구입하여 소음을 감소시키는 방법.

-공정 및 작업 방법의 변경으로 소음원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방법.

-흡음재를 작업장 벽에 설치하여 소음을 흡수하는 방법.

-차단막 등을 사용하여 소음원을 포위, 격리시키는 방법.

-기계의 가진력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진재를 지지하여 진동의 전달을 차단하는 방법.

<관리적 대책>

-적절한 휴식시간 제공 등 유해인자에 폭로되는 시간을 최소화하여 유해인자 폭로량을 조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소음 발생원 등에는 작업자가 보기 쉬운 위치에 소음, 분진 발생 장소라는 표시 및 귀마개, 방진마스크 착용 등 필요한 사항을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개인위생적 대책>

-작업자에게 귀마개, 방진마스크를 지급하고 착용토록 교육, 관리하여야 합니다.

-현장에 개인보호구 보호구함을 설치하여 보호구(귀마개, 방진마스크)를 위생적으로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4. 참고사항

*사업주는 산안법 제125조 제5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결과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(전자적방법을 포함한다.)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.(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 2020-44호 제 40조 1항, 작업환경측정결과의 알림 등)

- 사업장 내의 게시판에 부착하는 방법
- 사보에 게재하는 방법
- 자체정례조회 시 집합교육에 의한 방법
- 해당 근로자들이 작업환경측정결과를 알 수 있는 방법

*건설현장 소음관리

①소음 발생 저감

- 소음 발생이 적은 장비를 사용하고 철저히 정비하는 것만으로도 소음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다.
- 소음이 큰 컴프레서, 제너레이터 등은 작업장으로부터 가능한 멀리 둔다.
- 기계주변을 둘러싸서 소음을 차단한다.
- 사용하지 않는 장비는 전원을 끈다.

②소음 노출시간 저감

- 소음 발생 작업 시 조용한 작업과 순환하여 근무시키고 소음 발생 작업장과 떨어진 곳에서 휴식토록 한다.

③정기 청력검사